

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심사 신청서(작성예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명) 홍길동	②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0000년 00월 00일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한강로 00		
	연락처	전화 053-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신청 내용	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일반국도 4호선		
	점용목적 주유소 진출입로 설치		
	점용신청 장소 칠곡군 약목면 000리 00번지 일원		
	사업부지 장소 칠곡군 약목면 000리 00번지 일원		
사업부지 면적 (건축면적, 법정주차대수 등) 건축면적 00㎡, 법정주차대수 00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도로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61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2020년 5월 00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관리사무소장, 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위치도 2. 현장사진	수수료 : 없음
유의사항	1. 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심사 신청은 민원인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이용하여 약식으로 도로관리청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2. 사전심사에서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허가신청에서 점용물의 구조 등의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불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를 적고, 법인인 경우 법인 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란은 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처리절차

